



제 418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20호,
제2203821호, 제2203823호, 제2203824호,
제2203825호, 제2203826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의안 번호	법 률 안 명	발의자	발의일	위원회 회부일
22038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9.9.	2024.9.10.
22038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20382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2038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20382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2038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 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 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등).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 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

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 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등 7개의 기금 운용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생략) <u><신설></u>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략) <u><신설></u>	제5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⑤ (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까지에서-----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사용) ①·② (생략) <u><신 설></u>	제7조(기금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 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 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 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② (생략)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② (현행 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여유 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 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

[표 1] 개정안에 따른 개정 대상 기금(총 7개)

법 률 안 명	기 금 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호기금
	예금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신용보증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orinment)·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투자방식과는 달리, 최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는 “책임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임.

- 책임투자의 핵심적 특성으로는 ① 단기성과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난 장기적인 투자수익 추구, ②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 분석, ③ 선관주의 의무에 따른 주주권 행사 등이 있음.

[표 2] ESG 요소 사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 지역사회 관계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 뇌물 및 반부패 ○ 기업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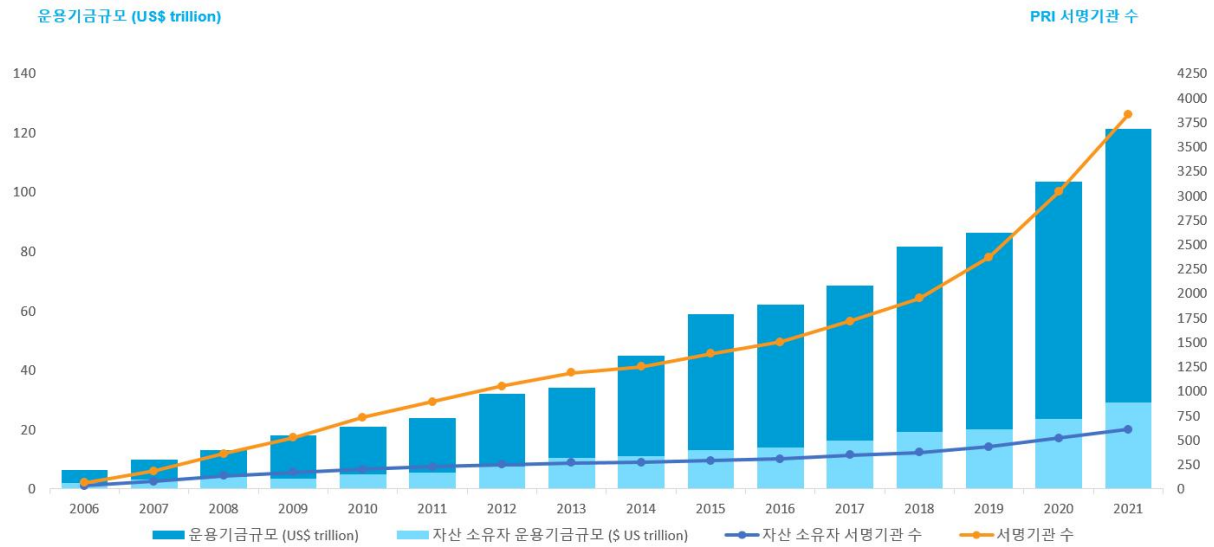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ESG 포털)

- 해외 주요국의 책임투자 도입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년 영국이 최초로 연기금의 책임투자 정보공시를 법제화¹⁾하였으며, 2006년 전 세계 기관투자가들에게 자발적 책임투자 실행을 권고하는 UN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라 함)이 제정된 이후 책임투자가 주류적 투자기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2021년 기준 책임투자원칙의 서명기관은 연기금, 자산운용사, 서비스공급자를 포함하여 총 3,800여 기관을 넘어섰으며, 총 운용 자산은 약 121조 달러에 이르고 있음.

1) 수정연금법(the Amendment to the 1995 pension act)

[그림 1] PRI 서명기관 수 및 운용기금규모



(자료 : PRI 홈페이지(<https://www.unpri.org/>) 자료 재구성)

- 한편,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가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운용을 하는 데 있어 사회책임투자적 요소인 윤리·사회·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표 3]과 같이 마련되어 있음.

[표 3] 해외의 연금금 사회책임투자 법제화 사례

국가	제도	설명
영국	The Amendment to the UK Pension Act(2000.7)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모든 주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회, 환경, 윤리의 세 요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려하는지를 공시토록 유도함
독일	AilZerG(2002.2)	연금제도가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하는지 공개 의무화
프랑스	Fabius Act(2001.2)	연금제도가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하는지 공개 의무화
스웨덴	Swedish State Pension Scheme	사회책임투자 방침의 기본으로 UN 협약을 채택하여 환경 및 사회적 요인이 펀드에 명확하게 통합됨
호주	재정서비스법(2002)	연금금 펀드 등 투자상품의 제공자는 상품설명서에 노동기준,

국가	제도	설명
		환경, 사회, 윤리적 고려 사항이 투자선택, 유지, 취득에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공개해야 함.
일본	환경고려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05.4)	제5조에서 국민은 투자행위를 함에 있어 기업의 환경정보를 감안하도록 권장

(자료 : 권순원,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SRI)」, 『연금포럼』 2012년 여름호, 국민연금연구원)

□ 우리나라도 책임투자에 대한 국내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들을 추진²⁾하고 있음.

○ 이는 기업에 대한 책임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기존에 재무적 성과만을 공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ESG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임.

□ 책임투자 규모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9년 UN PRI에 서명하였으며,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ESG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래,³⁾ 국내주식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시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해 왔으며, 그 규모와 범위⁴⁾를 점차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023.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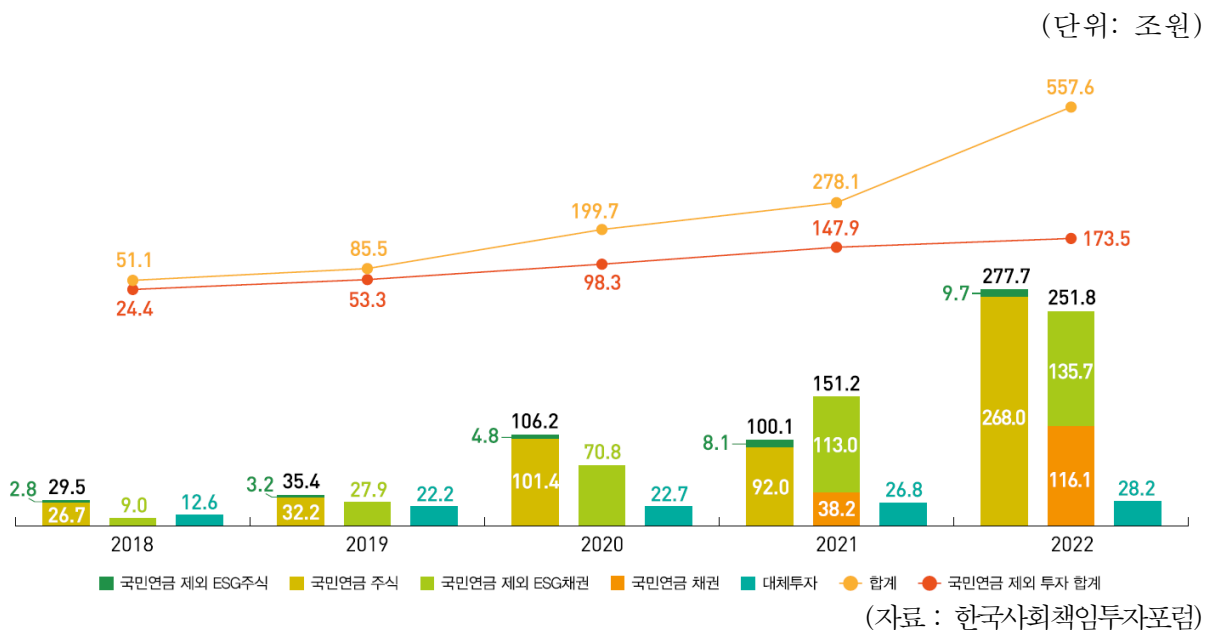
3) 「국민연금법」 제102조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4)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국내채권 및 해외주식 매입에 대해서도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음,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22년 총 책임투자 규모는 557.6조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384.1조원(68.1%)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연도별 책임투자 규모 추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안은 각 기금이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책임투자에 선도적인 역할로서 민간의 ESG 투자를 장려하는 등 책임 있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투자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및 투자 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ESG 투자 원칙의 규정 방식, 개별 기금 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근거법률에 이를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ESG 투자 원칙의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전체 기금의 자산운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ESG 투자원칙이 이러한 공공성 원칙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정부 기금은 68개로, 개별 법률에서 기금 자산을 운용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 외에, 「국가재정법」은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⁵⁾하고 있음.

- 제21대국회에서는 이러한 국가재정법 상 전체 기금의 자산운용원칙에 ESG 투자원칙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 발의⁶⁾되어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성 원칙에 ESG 투자 원칙이 포함된다는 의견 등에 따라 이를 추가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⁷⁾.

5)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5, 2111899)

7)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소위원회(2021.11.23.) 회의록 참조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부터 ESG 관련 평가지표를 보장하였음.

[표 4] 「기금운용평가지침」 ESG 관련 평가지표 보장

공공성 확보 노력도 평가방식 개정(2점 만점)	
기존(~2020)	개정(2021)
○ 공공성 확보 노력도 = $Min(0.2 + 90 \times \frac{\text{공공성투자규모}}{\text{투자가능규모}}, 2)$ ○ 공공성투자규모가 투자가능규모 대비 2% 이상이면 만점(2점) 획득	○ 공공성 확보 노력도 = $Min(0.1 + 90 \times \frac{ESG\text{투자규모}}{\text{투자가능규모}}, 1) + Min(0.1 + 90 \times \frac{\text{공공성투자규모}}{\text{투자가능규모}}, 1)$ ○ ESG 투자규모를 공공성투자규모와 분리하여 별도 평가 ○ 각 분야 투자규모가 투자가능규모 대비 2% 이상이면 각 1점 획득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I」)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공공성 원칙 외에 추가로 개별 법률에서 ESG 투자원칙을 명시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별 기금의 특성에 따라 여유자금을 장기적 측면에서 운용하게 되는 ESG 투자에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금융회사 부실 등 비상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높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만으로 운용하고 있어 ESG 투자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⁸⁾은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채권 상환 완료(2021.8.) 후 수입액 대부분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어 여유 자금을 주로 단기(3개월 내외)로 운용 중임⁹⁾.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경우, IMF 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담한 채무의 상환을 위해 설치된 계정성기금¹⁰⁾으로, 수입을 모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상환에 사용¹¹⁾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전액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에도 사업대기 자금이 없이 자금 유입시 곧바로 저축장려금 지급 등 사업비로 지출함에 따라 여유 자금을 모두 현금성 자금으로 운용¹²⁾하고 있음.
- 다만, 중장기자산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부터 ESG 관련 평가지표를 보장함에 따라 중

8)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부칙(제10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될 예정임.

10) 계정성기금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함.

11) ‘23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 : 8.9조원 → ‘23년 공자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지출 : 8.9조원

12) 2023년의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 연중 운용평잔은 35억 7,600만원으로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기 운용 자산 일부에 대해 ESG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표 5] 2023 회계연도 기금별 공공성 확보 노력도 평가 결과¹³⁾

(단위: 억 원)

기금	기금 자산 현황			주요 평가내용	평점
	단기	중장기	합계		
농림수산 신용보증기금	76 (0.39%)	19,210 (99.61%)	19,286 (100.0%)	· 연기금투자자의 신성장동력펀드에 평잔기 준 988억원을 투자하고, ESG펀드에 384억 원을 투자함.	2점 (만점)
신용보증기금	836 (0.66%)	126,080 (99.34%)	126,916 (100.0%)	· 연기금투자자의 신성장동력펀드에 평잔기 준 3,727억원을 투자하고, 총 4,460억을 ESG 관련 상품에 투자	2점 (만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258,23 (0.27%)	96,243 (99.73%)	96,501 (100.0%)	· 연기금투자자의 신성장동력펀드에 평잔기 준 7,634억원을 투자하고, ESG 채권형과 ESG 주식형에 총 9,507억원을 투자	2점 (만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36 (100.0%)	-	36 (100.0%)	공공성 확보 노력도 부분 미평가	-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18,425 (100.0%)	-	18,425 (100.0%)	· 공공성 예금에 평잔기준 352억원, ESG 채 권에 평잔기준 253억원을 운용	2점 (만점)

(자료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 7개 기금에 대
해 기금 자산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국
내외 ESG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입
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 개별 법률에 이를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21대국회에서의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 경과 및 이러한 ESG 투자 원칙을
개별법에 명시할 필요성, 중장기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예

13)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3회계연도에 평가되지 않았고, 예금보험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
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 대상이 아님.

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등 개별 기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
